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3. 1. 1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6,2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분이상 60분미만)	32,3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40분이상 60분미만)	65,73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또는 6%